

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
기획경제위원회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서울산업진흥원

# 정 관 변 경 보 고

2020. 9



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

#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## □ 개요

-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## □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### ○ 변경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및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### ○ 변경 내용

- 노동이사 규모 명확화 (제8조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/li><li>2. 삭제</li><li>3. 상임이사 2명 이내</li><li>4. &lt;신 설&gt;</li><li>4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</li><li>5. 감사 2명</li><li>6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</li></ol>	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/li><li>2. 삭제</li><li>3. 상임이사 2명 이내</li><li>4. 노동이사 2명 이내</li><li>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</li><li>6. 감사 2명</li><li>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</li></ol>

- 명칭 변경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 (제9조 및 제10조)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생략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~3. 생략</p> <p>③~⑨ 생략</p>	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~3. 현행과 동일</p> <p>③~⑨ 현행과 동일</p>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현행과 동일</p>

- 노동이사 권한 확대 (제25조)

▶ 기존의 이사회 참여 및 안건 심의·의결 외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권 추가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25조(이사회 소집)</b> ①~④ 생략</p> <p>⑤ &lt;신 설&gt;</p> <p>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p>	<p><b>제25조(이사회 소집)</b> ①~④ 현행과 동일</p> <p>⑤<u>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p>

관련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7667호, 공포일 2020.7.16.)</li> <li>○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공기업담당관-8948, 2020.8.22.)</li> </ul>
-------	---

**향후 추진계획**

- 이사회 의결: '20. 12월
- 서울시장 승인: '21. 1월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가: '21. 1월

#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## 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2. 삭제
3. 상임이사 2명 이내
4. 노동이사 2명 이내
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
6. 감사 2명
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임면)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3.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
③감사 2명중 1명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대표이사·선임직감사·선임직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⑤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, 시장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⑥삭제

⑦삭제

⑧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
⑨선임직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당연직이사와 당연직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25조(이사회)의 소집)**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.

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⑤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/li> <li>2. 삭제</li> <li>3. 상임이사 2명 이내</li> <li>4. &lt;신 설&gt;</li> <li>4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</li> <li>5. 감사 2명</li> <li>6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/li> <li>2. 삭제</li> <li>3. 상임이사 2명 이내</li> <li>4. <u>노동이사 2명 이내</u></li> <li>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<u>노동이사를</u> 포함한다)</li> <li>6. 감사 2명</li> <li>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</li> </ol>
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생략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생략</li> <li>③~⑨ 생략</li> </ol>	<p><b>제9조(임원의 임면)</b>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3. 현행과 동일</li> <li>③~⑨ 현행과 동일</li> </ol>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생략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현행과 동일</p>
<p><b>제25조(이사회 소집)</b> ①~④ 생략</p> <p>⑤ &lt;신 설&gt;</p> <p>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p>	<p><b>제25조(이사회 소집)</b> ①~④ 현행과 동일</p> <p>⑤<u>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p>